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양돈법률상담코너'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



김태욱 변호사

국선 변호사 선임에 관한 문의

Q 양돈 농가를 경영하다가 얼마 전에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자금이 부족하여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선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것이어서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귀하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격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무자격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신청은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어 소송구조제도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돈분양,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문의

Q 양돈분양을 하는 경우 PL법(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PL법이라 함은 제조물책임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조물책임법이라 함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므로, 양돈은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양돈분양과 관련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양돈분양하면서 양돈에 문제가 있다면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여 양돈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돈업도 상법적용을 받나요?

Q

모 종돈회사에서 돼지를 구입한 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축산업도 상업이므로 상법에 관한 상황을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양돈업이 상업이 아니라 그냥 축산업인줄 알았는데 상업이 맞습니까?

A

상법 제46조와 제47조에서는 상법상의 상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계속적으로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나 비록 상인이 아니더라도 상인과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축산업의 일종인 양돈업을 하시더라도, 양돈업을 하면서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계속적으로 돼지를 매매해왔거나 귀하와 거래를 한 모 종돈회사가 상인이라면 귀하와 종돈회사 간의 돼지거래는 상법상의 상행위에 해당해서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법상의 상행위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행위에 비해 영리성, 신속성, 집단성, 비개인성 등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상법은 일반적인 민법과는 법률의 규정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법에서 상사법정이율은 민사법정이율의 연 5분을 넘어서 연 6분으로 되어 있고,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는 10년이 원칙이나 상법에서는 5년으로 단축되어 있으며, 상행위의 대리는 민법상의 대리와 달리 본인을 위하여 대리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돈육으로 국민건강, 양돈으로 농촌건강